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

1. 발의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4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제9대 남양주시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위원회의 심사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

- 상임위원회 증설과 위원정수 및 소관 업무를 조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

현재(3개 위원회): 운영·자치행정·산업건설위원회 →

개정(4개 위원회): 운영·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회

나.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-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원 변경(안 제9조)

현재: 운영·자치행정·산업건설전문위원 →

개정: 운영·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전문위원

다. 남양주시의회 공인조례

- 직인의 종류 변경(안 제2조)

현재: 운영·자치행정·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→

개정: 운영·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

라.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- 의정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(안 제4조)

현재: 자치행정·산업건설위원장 →

개정: 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장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을 위해 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조직의 확대와 지속적인 도시발전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다만,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 9대 의회에서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 향후 추이에 따라 필요시 보완토록 하고,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중점을 두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, 「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」, 「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」, 「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